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Y-TOPIK)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본교 입학에 위해 자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Y-TOPIK)(이하 “자체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시험의 목적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미 취득 학생의 본교 한국어 자체시험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자에게 본교 학부, 대학원 입학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단, 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고시한 언어능력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이나 졸업 전에 언어능력기준(한국어능력시험)을 충족해야 한다.

제2장 시험의 내용

제2조(시험 종류 및 구성) ① 시험 종류는 읽기, 쓰기로 구분한다.

② 읽기, 쓰기 5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읽기, 쓰기 총 60분으로 한다.

제3조(시험의 합격 등급 결정) ① 시험의 합격 등급은 읽기, 쓰기로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시험 점수별 등급은 3급을 60점 이상, 4급을 70점 이상, 5급을 80점 이상, 6급을 90점 이상으로 한다.

제3장 시험의 시행

제4조(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실시 횟수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 일정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전에 공지 한다.

③ 해외에서 응시를 희망할 경우 대면 시험이나 IBT(인터넷 기반 시험)로 실시한다.

④ 시험 실시에 필요한 응시료를 응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이나 유행병과 같이 응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정한 별도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응시 자격)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미취득자

제6조(시험 접수) ① 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신청서를 지정한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원자가 접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접수 기간 동안 가능하며, 특히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동안 해당 시험장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한국어능력 시험에 응시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어능력 시험 응시료가 발생할 경우 지정된 계좌에 응시자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한다.

제7조(응시 가능 신분증) ① 한국어능력 시험 응시자는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입실 및 퇴실)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 결정 하에 입실 시간과 장소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중도퇴실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중도퇴실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제9조(성적 발표)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개별통지 한다.

-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③ 시험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하다.

제10조(성적증명서 발급) ① 성적증명서는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을 통해서 발급하며, 우편, FAX 및 E-mail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성적증명서 발급과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부정행위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 ① 다음 1~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 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나.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라. 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 가.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나.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로 하는 행위
- 다.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 라. 부정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마.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나 쪽지 교환 또는 손동작·소리 등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사. 시험 문제의 유출·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아.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배포하는 행위
- 자.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차.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

- ② 부정행위자의 성적 무효는 국제교류교육원장이 확정한다.
- ③ 성적 발표 후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 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제1항에 따른다.
- ④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시험의 관리

제12조(시험위원) ① 대학의 교직원이나 외부에서 자체시험의 출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시험 출제 및 채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한국어능력자체시험 출제 및 채점 수당 편성 및 집행 기준(제27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출제 수당		50,000원 / 세트당	문항수(25문항)×2,000원(문항당)
채점 수당	1 ~ 30명	50,000원 / 회당	
	31 ~ 60명	100,000원 / 회당	
	61명 ~	150,000원 / 회당	

부 칙(2021. 7. 0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